

KES 2024(한국전자전)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 “전자전” 이라 함은 『KES 2024(한국전자전)』을 말한다.
- “진흥회” 라 함은 전자전을 주최하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말한다.
- “참가업체” 라 함은 전자전 참가신청과 아울러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한 업체를 말한다.

제2조 참가 신청 및 참가비 납부

- 참가 신청 최소 면적은 단위부스(9m²)이며, 9m²의 배수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 참가 신청 후 인보이스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참가비의 50%를 “진흥회”에 납부해야 유효하며 잔금은 2024. 9. 6(금)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3조 전시장 사용기간

- 전시장 사용 기간은 코엑스 A홀 2024. 10. 19~26 (8일간) / 코엑스 B, D2홀 2024. 10. 20~26 (7일간)으로 한다.
- 전시장 개장 시간은 매일 전시기간 중 10:00~17:00 (7시간)로 한다.
- 준비 및 철거 기간 중 전시장 사용시간은 08:00~20:00 (12시간)로 하며, “참가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단, 시간 외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진흥회”가 제공한 ‘시간 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소정의 시간 외 사용료를 해당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부스배정

- 업체별 부스는 전시관별 참가규모, 참가신청일, 참가비 납부일, 연속참가, 참가횟수(“13년 이후) 기준의 배정 순위에 따라 부스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진흥회”는 효율적인 전시관 구성을 위해서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 규모 등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참가업체”는 배정 받은 전시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전대하거나 참가업체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제5조 전시실 관리

- “참가업체”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전시 물품 또는 관련 장비의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진흥회”는 이의 도난, 화재, 파손 등 전시장 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전시 물품에 대한 보험 가입은 “참가업체” 임의로 한다.

3. "참가업체"가 참가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전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단, 기획행사허용) 및 여신 전문 금융업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진흥회"는 즉시 전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전시회 폐막 전 부스를 철거하거나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5. "진흥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전시 준비 및 원상복구

1. "참가업체"는 배정된 부스 위치에 지정된 준비기간 내에 부스 설치 및 전시품 반입 등 전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참가업체"는 "전자전" 폐막 후 전시장 철거 기간 내 전시 장치물 및 전시품 일체를 완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 철거 비용을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부스 설치 제한 및 방화 규칙

1.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진흥회"가 지정한 범위(높이) 이상 초과할 수 없다.
2. 전시장 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되어야 하며 "진흥회"는 필요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상담 활동 등을 위하여 복층 시공 시, 반드시 주최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구분		높이제한
조립부스	기본	3.0m
	프리미엄	4.0m
독립부스	50부스 미만	4.5m
	50부스 이상	5.0m
스윙스페이스 (A,B홀 사이)		4.0m
전시장 로비		3.0m

주1. 사무국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 제한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주2.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요청이 있을경우 구조 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주3. 로비 부스시공은 야간(18시 이후부터)만 가능

제8조 중량 전시품 반입 제한

1. 다음의 상면 하중(정지 하중)을 초과하는 중량 전시품에 대해서는 전시장 내에 반입하거나 전시할 수 없으며, 1.5톤 이상 전시품에 대해서는 반입 전에 동 전시품의 제원을 "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치	제한하중
Coex Hall A, B, C, D 전체	1.5톤/m ²

2. 상기 1항의 상면 하중을 초과하는 전시품을 반입·전시코자 하는 경우, "참가업체"는 전시장 사용 개시 20일 전까지 전시품에 대한 구조 계산과 하중 분산 방안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량물의 반입, 반출, 설치 시는 상면에 집중 하중을 받지 않도록 분산 조치를 해야 한다.
4. 구조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가. 구조 계산서에는 설치 위치의 정확한 문구 또는 도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9조 참가 해지 및 환불

1. "진흥회"는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참가업체"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 나. "참가업체"의 일방적 의사로 참가를 취소하거나 배정된 전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거부할 때
 - 다. "참가업체"가 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시
2. 위 제 1항의 참가신청 해지 시 "참가업체"가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참가비를 완납한 업체가 회사 정리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참가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취소 사유를 포함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다.

취소 요청 공문 접수일	위약금	환불금액
전시회 개최 60일전('24.8.23)까지	50%	50%
전시회 개최 59일전('24.8.24)부터 개최일전('24.10.22)까지	100%	-

3. 정부 방침, 천재지변 등 진흥회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한국전자전이 취소되거나 연기 되었을 경우의 참가 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진흥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전시장 내 음향 통제 및 통로 이벤트 행사 금지

1. 전시장의 소음 레벨은 야간 65dB, 주간 75dB 이상의 경우 주위 전시 부스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최고 80dB를 초과할 수 없다.
2. 과도한 음향 방출로 전시장의 상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진흥회는

해당 부스의 전력 차단, 부스 폐쇄, 철거 등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을 본회에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업체"는 전시장 통로에 접하는 장소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없다.

제11조 참가업체 매뉴얼, 보충 규정 등 규정의 준수

1. "진흥회"는 전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참가업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참가업체"에 제공한다.
2. "진흥회"는 필요 시 본 규정 이외에도 세부운영 요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본 규정뿐만 아니라 보충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3. "참가업체"는 전시장(coex)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참가업체 KEA 준회원사(Observer 등급) 가입

1. 한국전자전 참가업체는 KEA 준회원사로 가입되며, 그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
2. KEA 준회원사 가입 시 전자IT분야 산업동향 및 시장자료 등 정보서비스 제공, 기업애로 대정부 건의, 정부포상 추천 등의 다양한 혜택 제공
3. 준회원사 가입시 별도의 가입비, 연회비 없음

제13조 규정의 해석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진흥회"와 "참가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진흥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